

독일의 의무부담부확약제도

● 신청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I. 들어가며

‘동의를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2011. 12. 1 신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동의를결을 통해 제지하려는 이 제도의 효용과 문제점은 도입 이전부터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으며,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²⁾ 최근 네이버(주) 및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 건 및 SAP코리아(주)의 거래상지위남용 혐의 건 등에 대한 동의를결 결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사건들에서 당해 제도의 활용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제도의 남용 또는 부작용의 우려에서 자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소비자 피해구제, 경쟁질서 회복 등을 위한 동의를결제 시행 - 「동의를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정 -”, 2014. 4. 3, URL: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iveView.jsp?news_no=1414&news_div_cd=1.

2) 이봉의·김건식·복홍석, “동의를결제도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관한 연구”, 자체연구수행계획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5.5.6, 1면.

유롭지 못한 실정이다.³⁾

독일에서는 2005년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GWB) 제7차 개정을 통하여 동의를결제와 유사한 제도인 ‘의무부담부확약제도(Verpflichtungszusage)’가 도입되었다. 전체적인 관련 절차를 요약하면(경쟁제한방지법 제32b조 제1항), 먼저 연방카르텔청이 잠정판단안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가 이 잠정판단안을 검토한 후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약속형태로 제시하면, 연방카르텔청은 그 약속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력을 선언하고 절차를 종료한다.⁴⁾ 의무부담부확약은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서 피해자 등 제3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확약 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⁵⁾ 독일의 의무부담부확약제도는 EU 규칙 1/2003을 기초로 한 것이고 미국의 동의명령제도와도 거의 동일하지만, 최종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⁶⁾ 법이론적으로 의무부담부확약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해석된다.⁷⁾

II. 의무부담부확약제도에 대한 찬반논의

1. 찬성의견

의무부담부확약은 공익 및 관련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더 많은 사건이 미리 해결되면 카르텔청은 시간과 자원을 더 중대한 위반사례, 즉 경성 카르텔(Hardcore-Kartellen)에 집중할 수 있다.⁸⁾ 기업

3) 앞의 글

4) 박성용, “표시광고법상 동의를결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2호, 2014. 8, 123면 참조.

5) 위의 글

6) 위의 글

7) Berg-Mäsch, Deutsches und europäisches Kartellrecht, 2015, p.277.

8) Bornkamm, in: FS Bechtold, 2006, S. 45 (58), Bernhard J. Georgii, Formen der Kooperation in der öffentlichen Kartellrechtsdurchsetzung im europäischen,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 2013, p.187에서 재인용.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부여되는 카르텔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대신 합의적 해결방안에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의 참여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 중 무엇이 구체적으로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 가장 최선의 방식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즉, 카르텔청은 더 이상의 노력 없이 위반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의 모색을 기업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차의 경제(Verfahrensökonomie)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신 카르텔청의 확인으로 위반행위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두려워하는 민사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구성요건적 효력(Tatbestandswirkung)은 없다.¹⁰⁾

2. 반대의견

(1) 초과규제 우려

카르텔청이 사실은 위협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를 규제한다면, 즉 만약 초과규제를 목표로 하는 집행관행(Handhabungspraxis)을 발전시킨다면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¹¹⁾

(2) 권리보호의 불확실성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충분한 권리보호 가능성을 보장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항고기회(Beschwerdemöglichkeit)가 없다면 기업이 흠이 있는 카르텔청의 구속적 선언을 법적 구제수단의 보장도 없이 서슴없이 받아들일 지는 불확실하고, 여기에서 의무부담부확약제도의 절차적 매력과 효율성이 감소한다.¹²⁾

제도 운영상 기업이 카르텔청의 구속적 선언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¹³⁾ 즉, 의무부담부확약은 명백한 불충분성(Unzulänglichkeiten)이 인정되

9) aaO, p.187 참조.

10) aaO.

11) aaO.

12) aaO.

13) aaO, p.188 참조.

지 않는 한,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가 불확실하다.¹⁴⁾ 주로 원래는 위반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카르텔청도 의무를 구속적인 것으로 선언할 필요가 없었거나, 의무가 위반행위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르텔청이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기업도 확약을 통해서 카르텔 위반에 대한 구속적인 결정을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인정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¹⁵⁾ 기업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의무부담부확약을 포기하고 카르텔청의 종료처분(Abstellungsverfügung)을 받은 후, 중국적으로 법원의 심사를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료처분을 통해 기업의 위반행위가 확정될 수 있는 경우, 구속효(Bestandskraft, 경쟁제한방지법 제33조 제4항) 때문에 민사상 후속 소송이 이어질 우려를 감수해야 한다.¹⁶⁾

현재 의무부담부확약과 관련한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어떤 대안이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의무부담부확약에 항고소송 가능성을 인정하면, 카르텔청이 법원의 판단상으로 기업의 행위가 경쟁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을 만한 사안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뜻밖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장되고 있다.¹⁷⁾

III. '의무부담부확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및 한국의 '동의를결제'와의 비교

1. 독일 카르텔청의 역할범위

의무부담부확약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르텔청이 잠정적인(vorläufig), 즉 개괄적인(summarisch) 판단을 통한 기업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타당한 의구심(vertretbare Bedenke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당 기업에게 통지하면, 해당 기업은 이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특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 형태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카르텔청은 재량을 가지고, 여타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처럼 우선적으로 비례

14) aaO, p.185 참조.

15) Bornkamm, in: Langen/Bunte, § 32b, Rn. 14; Bechtold, § 32b, Rn. 6a, aaO, p.185에서 재인용.

16) aaO, p.185.

17) Klose, in: Wiedemann, § 51, Rn. 46, aaO, p.185에서 재인용.

원칙에 종속된다.¹⁸⁾ 기업의 약속이 카르텔청이 카르텔 위반 사항을 종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필요한 범위만을 확약처분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¹⁹⁾ 법문상 명확하게 카르텔청은 확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의 적용상 약속하지 않은 조치를 확약처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²⁰⁾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독일 또한 대부분의 경우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연방카르텔청이 경쟁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연방주들과 회의, 세미나,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의무부담부확약에 이른 사례도 있다.²¹⁾ 즉, 협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협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2.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의무부담부확약

경쟁제한방지법(GWB)은 기업의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경우, 동의를결을 제한하는 한국과는 달리 의무부담부확약에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본법상의 비례원칙²²⁾ 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무부담부확약은 위반행위에 대한 종료처분(Abstellungsverfügung)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²³⁾ 왜냐하면 경쟁제한방지법(GWB) 제32b조 제1항은 법 형식적으로 종료처분이 규정된 제32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고, 내용적으로는 비례원칙과 관련하여 의무부담부확약이 종료처분에 비해 더 완화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²⁴⁾ 기업이 협조의사를 밝히고 있고, 약속한 내용이 경쟁법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적합한 경우, 카르텔청의 선택재량은 0

18) MünchKomm/Kesler, §32b GWB Rn. 15; FK-KartellR/Jaeger, Lfg. 72(2010), §32b GWB Rn. 21, Berg-Mäsch (각주 7), p.282에서 재인용.

19) Georgii (각주 8), p.282.

20) MünchKomm/Kesler, §32b GWB Rn.20, aaO., p.282에서 재인용.

21) 연방카르텔청 B2-90/01-1, 수목 판매 및 임업 관련 의무부담부확약 절차.

22) EU법원에서도 독일 법제에서 유래한 비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비례원칙에 따라 경쟁참여주체에게 재정상의 부담을 가하는 처분은, 해당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하고 필요할 때만 허용된다. 여러 가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부담은 목표와 적절한 비례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23) Maria Christina Wolter, *Zusagenentscheidungen als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Wettbewerbsverstöße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Kartellrecht*, 2011, p.46.

24) aaO.

으로 수렴한다.²⁵⁾ 반대로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경우, 완화된 수단인 의무부담부확약이 아니라 종료처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비례원칙상 당연하다. 의무부담부확약은 종료처분보다 더 유연한 제도로써, 명백하게 카르텔 위반이 아닌 다른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되는 기업의 행위 중 특별히 경쟁침해적인 부분만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²⁶⁾ 의무부담부확약이 이렇게 유연하고 완화된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증명될 수 있는 경쟁위반 행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제32b조 제1항의 구성요건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포상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⁷⁾

같은 맥락에서 의무부담부확약은 벌금 부과와 선택적 관계에 있지만 ‘경쟁 침해행위의 중대성’이 구별 기준이 될 수 있다. 중대한 경쟁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경성 카르텔, 가격 담합, 시장 점유율 그리고 그 밖의 국내 시장에서의 활동제한과 관련한 경우, 의무부담부확약이 아니라 벌금 부과가 고려된다.²⁸⁾

3. 의무부담부확약의 목적

동의의결제와 유사한 대부분의 제도들은 장래의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함과 더불어 과거의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다만, 각각의 제도가 어느 쪽을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지는 다르다.

의무부담부확약은 벌금 부과와 선택적 관계(Alternativverhältnis)에 있다.²⁹⁾ 의무부담부확약과 벌금은 앞서 설명한 ‘경쟁 침해행위의 중대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될 수 있다. 첫째, 카르텔청은 의무부담부확약 절차에서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명확한 위반행위의 확정은 벌금부과 요건이 된다.³⁰⁾ 둘째, 카르텔청이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부담부확약이 우선적으로 적

25) Wolter, 위의 책, p.47.

26) Wolter, 위의 책, p.52.

27) Wolter, 위의 책, pp.52-53.

28) Wolter, 위의 책, p.68.

29) Bronett, Kommentar zum europäischen Kartellverfahrensrecht, Art. 9 Rn. 4 Wolter 등, 위의 책, p.65에서 재인용; ‘명확한 위반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적용 범위가 구분되지만, 실무상 명확한 위반행위인가 아니면 위반행위에 대한 의구심인가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U 규칙 1/2003 제23조 제2항 a)에 따라 벌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행위에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 관계로 인정한다.

30) Wolter, 위의 책, p.67.

용된다.³¹⁾ 즉, 벌금이나 의무부담부확약이냐의 선택은 카르텔청이 어떤 사건에서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의 문제로 전이된다.³²⁾ 의무부담부확약과 벌금의 적용범위를 실무상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예방적 목적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독일의 의무부담부확약의 경우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장래의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EU 규칙 1 2003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카르텔 및 독점 문제에 관해서 권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원국 카르텔청은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³³⁾ 경쟁관계가 제3국과 연관된 경우, 그 국가의 경쟁당국과의 협조는 상응하는 협력 조약(Kooperationsabkommen)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하다.³⁴⁾ EU 규칙 1 2003 제14조 제1항에 상응하는 규정은 본질상 당연히 국내 경쟁법에 존재하지 않는다.³⁵⁾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 내의 경쟁법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경쟁제한방지법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가 없다.

31) aaO.

32) Wolter, 위의 책, p68.

33) Wolter, 위의 책, p89 참조.

34) aaO.

35) aaO.

IV. 시행 사례

〈표 1〉 사건별 협의 및 내용 ³⁶⁾

사건번호	대상	날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무부담부확약 내용
B3-164/14	소다스트림	2015.01.22.	탄산수 제조기의 CO2 실린더의 교환 및 충전의무를 해태 하면서도, 소다스트림이 직접 충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의무를 제한함	소다스트림이 인정한 판매처에서 충전 받은 경우까지 품질보증의무를 넓힘
B3-123/11	자발적 약사 연합 베스트 팔렌 리페-	2014.09.29.	거래 병원 기존 실적에 따라 혈당측정기의 가격을 다르게 공급함	불공정한 가격협상 중지
B4-9/11	독일은행연합	2014.04.08.	전자캐시사업의 청산을 목표로 모든 은행이 전자캐시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단일화함	동일한 전자캐시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정 폐지
B8-180/11-1	지방자치단체 (Cölbe)와 지자체 소유 전력공급회사	2013.12.02.	전기공급을 위한 도로사용권한 관련 다른 회사보다 해당 지자체 전력공급회사를 우선함	도로사용허가 절차를 새로 시작
B3-11/13, B3-11/13-1, 2	브란덴부르크 안과의사조합 및 보험회사 AOK	2013.07.01.	안과의사와 보험회사가 맺는 백내장 수술 등 관련계약을 해당 주에 속하지 않은 의사와는 체결하지 않음	여러 주에서 활동하는 안과의사에게도 계약 체결의 자유를 인정
B7-30/07-1	뒤셀도르프 시와 지멘스	2013.05.24.	뒤셀도르프 시는 지멘스에게 화재 경보기기의 작동을 위한 알람 시스템을 10년동안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지멘스와의 계약 대신 공고를 통해 알람 시스템 공급자를 결정하기로 함
B7-22/07	방송사(ProSieben/Sat1, RTL)	2012.12.27.	방송 프로그램을 암호화해서 유료 방송으로 공급함	암호화하지 않고 방송 공급

36) 연방카르텔청 홈페이지 http://www.bundeskartellamt.de/DE/Home/home_node.html

사건번호	대상	날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무부담부확약 내용
B9-96/09	항공사(Lufthansa)	2012.12.17.	여행사에게 루프트한자나 자매회사인 시티라인, 저먼윙스의 일정 한도이상 이용 시 특별 할인과 일정액의 환급을 약속하면서, 경쟁사를 포함한 전체 판매자료를 요구함	여행사와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관련된 정보전달 의무를 삭제
B10-16/11	지방자치단체(Pulheim)	2012.06.22.	전기 및 가스공급면허 계약에서 해당 지자체 에너지공급회사를 우선시 함	전기 및 가스공급자의 선정을 위한 공고 개시
B8-159/11	마인츠 수도공급회사(Stadtwerke Mainz Netze GmbH)	2012.05.08.	수도요금(식수)을 평균요금이나 다른 경쟁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었을 가격보다 높게 인상함	수도요금을 다시 정상범위로 인하
B6-114/10	독일축구협회(DFL)	2012.01.12.	분데스리가 스포츠중계권을 독일축구협회에서 통합판매함	통합판매가 개별판매보다 효율성이 뛰어나고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향상됨을 밝힘, 1부와 2부 리그의 경기일정을 조정하고 중계방식 별 판매모델을 다양하게 제시
B10-17/11	마크레베어(Markkleeberg)시	2011.11.21.	에너지공급을 위한 도로사용권한 관련 다른 회사보다 해당 지자체 전력공급회사를 우선함	가까운 시일 내에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새로 시작할 것을 약속
B10-6/11	딘켈스빌(Dinkelsbühl)시	2011.10.18.	에너지공급을 위한 도로사용권한 관련 다른 회사보다 해당 지자체 전력공급회사를 우선함	가까운 시일 내에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새로 시작할 것을 약속
B10-31/10	전력공급회사(Städtische Werke Aktiengesellschaft)	2011.09.26.	심야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함	초과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반환

사건번호	대상	날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무부담부확약 내용
B10-13/09	전력공급회사 (E.ON Mitte AG)	2010.11.11.	심야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함	초과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반환
B10-15/09	전력공급회사 (E.ON Westfalen-We-ser)	2010.11.11.	심야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함	초과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반환
B10-24/09	전력공급회사(SÜWAG Energie AG)	2010.10.29.	심야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함	초과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반환
B10-38/09	전력공급회사 (Üb-elandwerk Fulda Aktiengesellschaft)	2010.10.29.	심야전기요금을 지나치게 인상함	초과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반환

〈표 2〉 분야 및 조문별 건수³⁷⁾

2011년		의무부담부확약 건
a) 카르텔		
§§ 1, 2 GWB	카르텔금지 (합계)	1
	경성카르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기타 수평적 협력	
	수직적 합의	1
b) 시장지배, 경쟁제한적 행위(남용)		
§§ 19 이하 GWB	남용 (합계)	2
§ 19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2

37) 연방카르텔청 활동보고서, 2012.

§ 20 ^{II}	차별 및 불공정한 방해 금지	
§ 20 ^{III}	우대 조건의 제한 금지	
§ 20 ^{IV}	원가 이하 판매 금지	
§ 20 ^{VI}	단체 차별	
§ 21 ^I	보이콧 금지	
§ 21 ^{II-IV}	기타 경쟁제한적 행위	
c) 특정 경제분야를 위한 특별규정		
§ 28 GWB	제조업자 조합, 농업	
§ 29 GWB	에너지 산업	
§ 30 GWB	신문과 잡지의 판매가 준수 의무	
구 § 103V GWB 관련 § 131VI GWB	수도공급회사에 대한 남용행위 감독	

V. 나가며

독일의 의무부담부확약은 EU 규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미국의 동의명령제도나 유럽연합의 서약이행결정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카르텔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기본법에서 도출된 비례원칙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목적대로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쟁당국의 완화된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부담부확약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업의 권리보호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더 명확한 규정을 둘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다.

구 슬

(독일 하노버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참고문헌

- 박성용, “표시광고법상 동의를결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2호, 2014. 8.
- 이봉의·김건식·복홍석, “동의를결제도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관한 연구”, 자체연구수행계획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5.5.6.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URL: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iveView.jsp?news_no=1414&news_div_cd=1.
- Berg-Mäsch, Deutsches und europäisches Kartellrecht, Luchterhand: Köln, 2015.
- Georgii, Bernhard J, Formen der Kooperation in der öffentlichen Kartellrechtsdurchsetzung im europäischen, deutschen und englischen Recht, Nomos: Baden-Baden, 2013.
- Kapp, Thomas, Kartellrecht in der Unternehmenspraxis, Imprint: Springer Gabler: Wiesbaden, 2014.
- Loewenheim, Ulrich; Ablasser-Neuhuber, Astrid; Loewenheim-Meessen-Riesenkampff, Kartellrecht, Beck: München, 2009.
- Wölter, Maria Christina, Zusageentscheidungen als behördliche Maßnahmen gegen Wettbewerbsverstöße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Kartellrecht, Lang: Frankfurt am Main, 2011.